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부착명령 집행정지 사유 추가 등〉

■ 주진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5444호)

2025. 3.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성 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13세이상 16세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 등을 전자장치 부착 대상 성폭력범죄에 포함	3
2. 특별준수사항에 주거지 등에 대한 보호관찰관의 출입 및 점검요구 준수 추가	6
3.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개시 시점 정비	11
4. 부착명령의 집행정지 사유에 부착명령 집행 전 저지른 범죄로 구금 ·수용되는 경우를 포함	14
5.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의 영상정보 제공 요청 사유	17
6. 가석방·가종료등·집행유예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정지 사 유 보완 등	19
7. 부칙	2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주진우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1. 11.
3. 회 부 일 : 2024. 11.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9년 1월 15일 개정되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간음·추행 죄를 저지른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또한, 성폭력·살인 등 고위험 피부착자의 경우에는 주거지 내부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상존하여, 고위험 범죄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보호관찰관이 주거지 등을 출입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피부착자가 주거지 내 출입을 강력히 거부하는 경우 강제로 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함.

한편,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전자장치가 부착되기

전 다른 범죄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경우에도 부착명령 집행이 개시되어 구금기간이 부착기간에 산입되고,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 전에 저지른 범죄(여죄)로 수용될 경우에도 부착명령 집행이 정지되지 않아 전자장치 부착기간이 진행되는 등 전자감독제도의 도입 취지 및 실효성이 약화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죄를 추가하고, 보호관찰관이 피부착자의 주거지 등을 출입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준수사항에 “주거지, 차량 등에 대한 보호관찰관의 출입 및 점검요구에 따를 것”을 신설하는 한편, 부착명령 개시 이전에 다른 범죄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될 경우 구금이 종료된 날부터 부착명령을 개시하도록 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이후 구금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수용된 기간이 부착기간에 산입되지 않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9조의2, 제13조 개정 등).

III. 검토의견

1. 13세이상 16세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 등을 전자장치 부착 대상 성폭력범죄에 포함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규정된 19세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등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에 포함하는 내용임.

현 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2. -----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제8조(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제9조(강간 등 상해·치상) 및 제10조(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	다. ----- ----- ----- ----- <u>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u>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 ----- -----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 현행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 성폭력범죄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는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8조(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제9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10조(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만 규정¹⁾되어 있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²⁾)는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된 상황임³⁾.

그런데,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형법 제305조제2항⁴⁾의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
- 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제297조의2(유사강간)·제298조(강제추행)·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제300조(미수범)·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제305조의2(상습범),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9조(강도강간)·제340조(해상강도)제3항(사람을 강간한 죄만을 말한다) 및 제342조(미수범)의 죄(제339조 및 제340조제3항 중 사람을 강간한 죄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까지의 죄 및 제15조(미수범)의 죄(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제8조(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제9조(강간 등 상해·치상) 및 제10조(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
-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제8조에 따른 장애 아동·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2019년 1월 15일 신설되었음.
- 4)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한 19세 이상의 자를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의 예에 의한다'가 포함되고 있으므로,

형법 제305조제2항의 구성요건에 '궁박한 상태⁵⁾를 이용하여'라는 요건과, '해당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추행하게 하는 행위'를 추가한 형태의 가중적 구성요건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를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 성폭력범죄에 추가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해 보임.

- 참고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보안처분 중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보안처분 중 하나인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를 대상 성폭력범죄로 규정⁶⁾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도 대상으로 하고 있음.

5) '궁박한 상태'란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말하는데, 경제적 이유에 의한 것에 한정되지 않고 정신적·육체적·사회적 이유로 인한 것도 포함하고, 궁박한 상태에 이른 원인은 묻지 않음. 아동·청소년이 가출하여 의식주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 대표적임.
'형법주해 제9권', 박영사, 2024., p.893.

6)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부터 제10조(강간 등 살인·치사)까지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까지의 죄 및 제15조(미수범)의 죄(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다. 「형법」 제297조(강간)·제297조의2(유사강간)·제298조(강제추행)·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제300조(미수범)·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해상강도)제3항(사람을 강간한 죄만을 말한다) 및 제342조(미수범)의 죄(제339조 및 제340조제3항 중 사람을 강간한 죄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2. 특별준수사항에 주거지 등에 대한 보호관찰관의 출입 및 점검요구 준수 추가

개정안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자(이하 “피부착명령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준수사항에 주거지, 차량 등에 대한 보호관찰관의 출입 및 점검요구에 따를 것을 추가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임.

현 행	개정안
제9조의2(준수사항) ① 법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준수사항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9조의2(준수사항) ① -----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신설>	5의2. 주거지, 차량 등에 대한 보호관찰관의 출입 및 점검요구에 따를 것
6. (생략)	6. (현행과 같음)
제39조(벌칙) ①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제9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벌칙) ① ----- -----제9조의2제1항제3호·제4호 또는 제5호의2-----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와 같이 성폭력범죄 및 살인범죄 등 특정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가 부착된자(이하 “피부착자”)들의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위험 범죄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보호관찰관들이 이들의 주거지 및 차량에 출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 현행법 제9조제3항7)에 따라 피부착명령자는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게 되고, 보호관찰 대상자가 지켜야 할 일반적인 준수사항8)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9)에서 현행법 체계에서도 보호관찰관들이 피부착자의 주거지에 “방문”하고 피부착자가 이에

7)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 ③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

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①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주거지에 상주(常住)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善行)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4. 주거를 이전(移轉)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의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9)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벌칙) ②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경고)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준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형의 집행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할 수 있다.

응하지 않을시 제재할 수 있으나, 위 “방문”에 주거지나 차량 등의 ‘내부’ 출입·점검 권한까지 포함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개정안은 전자장치 피부착자들에게 ‘보호관찰관이 방문하면 응대할 것’이라는 준수사항 보다 구체적인 ‘주거지, 차량 등에 대한 보호관찰관의 출입 및 점검요구에 따를 것’이란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고 위반시 보다 강화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전자장치 피부착자들이 보호관찰관의 출입을 강력히 거부하는 경우에도 보호관찰관의 피부착자 주거지 등의 출입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여 재범을 예방하고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 다만, 보안처분에 병과하여 부과하는 특별준수사항은 형벌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 개정안으로 도입하는 특별준수사항의 경우는 위반시 바로 형사처벌이 되는 범죄구성요건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의무위반 행위의 내용과 모습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하므로,

주거지, 차량 외에 보호관찰관이 출입 및 점검요구를 할 수 있는 ‘등’에 해당하는 대상을 주거지 및 차량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항¹⁰⁾ 중 선택하여 법률에 추가적으로 규정

하거나, 주거지 및 차량과 등을 포괄할 수 있는 대상을 범문에 한정할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제1항¹¹⁾은 경찰관의 ‘위협 방지를 위한 출입’을 규정하면서 출입 대상 장소를 “토지·건물·배 또는 차”로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에 따른 준수사항¹²⁾들의 경우에도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등’이 포함하고 있는 대상을 특정 시간대, 특정 지역·장소, 특정 인, 중독성 있는 물질로 한정하고 있음.

- 또한, 현행법은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할 경우 제3호(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와 제4호(특정 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10)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법제처 유권해석 22-0189(2022.4.20.), 14-0498(2014.10.10.)’

1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위협 방지를 위한 출입) ① 경찰관은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6조에 따른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

1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준수사항) ① 법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준수사항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2.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

2의2. 주거지역의 제한

3.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4.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5.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의 사용금지

6.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벌금에 처하고, 나머지 준수사항[1호(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2호(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 2호의2(2의2. 주거지역의 제한), 5호(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의 사용금지), 6호(그 밖에 부칙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¹³⁾, 각각의 준수사항 위반시의 법정형과 비교하여 개정안에 따라 신설하는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법정형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1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①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제9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제9조의2제1항제1호·제2호·제2호의2·제5호 또는 제6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개시 시점 정비

개정안은 부착명령 집행 개시시점의 예외 사유에 피부착명령자가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범죄 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으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경우, 그 구금이 종료된 날을 추가하는 내용임.

현 행	개정안
제13조(부착명령의 집행) ①부착명령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을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가종료되는 날 석방 직전에 피부착명령자의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함으로써 집행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집행한다.	제13조(부착명령의 집행) ①----- ----- ----- ----- ----- ----- -----.
1.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으로 <u>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계속될 경우에는</u>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을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 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가종료 되는 날부터 집행한다.	1. ----- ----- <u>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되거나 형 또는</u> ----- ----- <u>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에 따른 구금이 종료되는 날,</u>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13조제1항 본문은 부착명령의 집행은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범죄 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면제·가석방,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이하 “형집행종료등”) 되는 날 피부착명령자의 신체에 석방 직전 전자장치를 부착함으로써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제1호는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으로 형·치료감호의 집행이 계속될 경우 다른 범죄사건의 형집행종료등이 되는 날을 전자장치 부착 개시시점으로 예외를 두고 있는데, 이는 다른 범죄로 인해 수용된 경우 전자장치 부착 집행개시시점을 명확히 하여 수용기간이 실제 전자장치 부착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임.

- 그런데, 현행법은 집행 개시시점의 예외사유에 다른 범죄사건으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경우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피부착명령자가 다른 범죄사건으로 인한 구속영장으로 구금된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개시시점이 제13조제1항본문에 따른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범죄의 형집행종료등이 된 날로 해석되어 구금기간이 부착기간에 산입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피부착명령자가 다른 범죄사건으로 석방 직전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경우, 그 구금이 종료되는 날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개시시점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구금기간이 전자장치 부착기간에 산입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실효성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

고 보임.

다만, 피부착명령자가 석방 직전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았지만 죄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구금기간 동안에는 부착명령이 집행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현행법 제13조제7항¹⁴⁾에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를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최근 특정범죄자 중 일부가 해당 범죄의 형 집행 종료 직전 다른 범죄가 추가로 밝혀지고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구금되는 경우¹⁵⁾가 있었음.

1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부착명령의 집행)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착명령의 집행을 정지된다.

1. 부착명령의 집행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때
2. 부착명령의 집행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3. 가석방 또는 가종료된 자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가석방 또는 가종료가 취소되거나 실효된 때

⑦ 제6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구금이 종료되는 경우 그 구금기간 동안에는 부착명령이 집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1.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경우
2. 검사가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또는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3.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15) ‘연쇄 아동성폭행범 000이 출소를 딱 11시간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16일 다시 구속됐다.’, 서울신문, 2022.10.17.

‘22. 10. 16.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000 1차 구속/ ‘22 11. 2. 다시 경기 A시 아동 강제추행 등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법원에서 발부 받았고, 앞서 발부된 1차 구속영장에 대하여는 구속 취소함.

‘000의 아동 성폭력 등 사건 수사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보도자료, 2022. 11. 4.

4. 부작명령의 집행정지 사유에 부작명령 집행 전 저지른 범죄로 구금·수용되는 경우를 포함

개정안은 전자장치 부작명령 집행 전에 저지른 다른 범죄(여죄)로 인해 구금·수용 되는 경우 부작명령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현 행	개정안
제13조(부작명령의 집행) ⑥ <u>다음</u>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작명령의 집행을 정지된다.	제13조(부작명령의 집행) ⑥ <u>제1항에 따라 부작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이후 다음</u> -----.
1. <u>부작명령의 집행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때</u>	1. <u>구속영장</u> ----- -----
2. <u>부작명령의 집행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u>	2. <u>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u>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 제6항에 따라 집행이 정지된 부작명령의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집행한다.	⑧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제6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또는 가석방된 때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한다.</u>	2. <u>제6항제2호 및 제3호</u> ----- ----- <u>면제·가석방된 때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된</u> ----- -----.
3. <u>제6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그 잔여기간을 집행한다.</u>	<삭 제>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13조제6항제1호 및 제2호¹⁶⁾는 피부착자가 부착명령 집행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범죄로 인한 수용기간에는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없고 수용기간이 실제 전자장치 부착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임.

그런데, 현행법은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정지 사유를 부착명령 ‘집행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구금 또는 수용되는 때로 규정하여, 피부착자가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전에 저지른 부착명령 대상 범죄 이외의 다른 죄(여죄)’로 구금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상황임.

- 개정안은 피부착자가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전에 저지른 부착명령 대상 범죄 이외의 다른 죄(여죄)’로 구금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도 부착명령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실제로 피부착자가 여죄로 수용되어 부착기간이 선고시의 부착기간 보다 적어지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16)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부착명령의 집행)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된다.

1. 부착명령의 집행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때
2. 부착명령의 집행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여죄 수용 피부착자 수용기간 및 실제 부착기간 현황>

2023. 12. 31. 기준.

연번	성명	사범	선고 시 부착기간	여죄 수용기간	실제 부착기간
1	A	성범죄	10년	7년	3년
2	B	성범죄	10년	12년	-
3	C	성범죄	10년	5년	5년
4	D	성범죄	3년	8월	2년 4월
5	E	성범죄	10년	3년	7년
6	F	성범죄	2년	8월	1년 4월

※ 선고시 평균 부착기간은 7년 6월, 평균 여죄 수용기간은 4년 9월, 평균 실제 부착기간은 2년 9월(선고시 부착기간 대비 실제 부착기간은 36.6%에 불과)

자료 : 법무부

○ 참고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 4항제1호 및 제2호¹⁷⁾는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이하 “치료명령”)의 집행정지 사유를 ‘치료명령의 집행 중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때’ 또는 ‘치료명령의 집행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로 규정하여,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치료명령이 개시된 이후 저지른 추가적 범죄 뿐만 아니라 치료명령 집행 전 저지른 치료명령 대상 범죄 이외의 다른 죄(여죄)로 인해 치료명령 집행 중 구금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도 치료명령의 집행이 정지되도록 해석되고 있음.

17)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치료명령의 집행)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치료명령의 집행이 정지된다.

1. 치료명령의 집행 중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때
2. 치료명령의 집행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3. 가석방 또는 가중료·가출소된 자에 대하여 치료기간 동안 가석방 또는 가중료·가출소가 취소되거나 실효된 때

5.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의 영상정보 제공 요청 사유

개정안은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이 피부착자가 ‘주거지, 차량 등에 대한 보호관찰관의 출입 및 점검요구에 따를 것’의 준수사항(안 제9조의2제1항제5호의2)을 위반하는 경우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영상정보 제공 협조 요청 사유에서 제외하는 내용임.

현행	개정안
제16조의3(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생략)	제16조의3(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피부착자가 제9조의2제1항 각 호(<u>제4호</u> 및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준수사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효용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부착자에 대한 신속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를 통하여 수집된 영상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u>제4호</u>, <u>제5호의2</u>----- --.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피부착자가 현행법 제9조의2제1항 각호의 준수사항¹⁸⁾(제4호와 제6호를 제외)을 위반하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긴급히 필요한 경우 위치추적관제센터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영상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피부착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개정안 제9조의2제1항제5호의2가 신설하고 있는 ‘주거지, 차량 등에 대한 보호관찰관의 출입 및 점검요구에 따를 것’의 준수사항은 보호관찰관과 피부착자가 직접 대면해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위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로 영상정보의 제공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18) 제9조의2(준수사항) ① 법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준수사항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2.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
- 2의2. 주거지역의 제한
3.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4.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5.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의 사용금지
6.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가석방·가종료등·집행유예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정지 사유 보완 등

개정안은 가석방·가종료 및 집행유예 기간 동안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이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제13조제6항제2호 준용), ②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경우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됨에도 불구하고 불송치결정, 불기소처분 및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 확정 등으로 구금이 종료되는 경우는 구금기간 동안 부착명령이 집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제13조제7항 준용) 내용임.

현 행	개정안
제27조(준용) 이 장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에 관하여는 <u>제13조제4항·제6항제1호·제8항제1호·제9항</u> ,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준용) ----- ----- <u>제13조제4항</u> , 같은 조 제6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같은 조 제9항-- ----- -----.
제31조(준용) 이 장에 따른 부착명령에 관하여는 제6조,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0조제1항, 제12조, <u>제13조제4항·제6항제1호·제8항제1호·제9항</u> ,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제31조(준용) ----- ----- ----- <u>제13조제4항</u> , 같은 조 제6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같은 조 제9항----- ----- -----.

○ 현행법 제3장은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지 아니한 특정범죄자로서
가석방 되는자에게는 가석방기간 동안, 가종료등이 되는자에게는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로 가석방되는
자에게 가석방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 기간을 정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¹⁹⁾, 가석방이 실효·취소된 때 또는 가
종료자등의 보호관찰이 종료된 때 전자장치 부착의 집행이 종료되
도록 규정²⁰⁾하고 있으며,

제4장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
호관찰과 함께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 내에서 전자장치 부착을 명
할 수 있도록 하고²¹⁾,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된 때 부착명령의 집

19)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제22조(가석방과 전자장치 부착) ① 제9조에 따른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지 아니한 특정 범죄자로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자는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가석방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심사위원회는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가석방 예정자의 범죄내용, 개별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가석방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간을 정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이하 “치료감호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제9조에 따른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지 아니한 특정범죄자로서 치료감호의 집행 중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피치료감호자나 보호감호의 집행 중 가출소되는 피보호감호자(이하 “가종료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사회보호법」(법률 제7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20)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부착집행의 종료)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1.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거나 가석방이 실효 또는 취소된 때
2. 가종료자등의 부착기간이 경과하거나 보호관찰이 종료된 때
3. 가석방된 형이 사면되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2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제28조(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① 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 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행이 종료되도록 규정²²⁾하고 있음.

- 그런데, 가석방·가중료등·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범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때는 가석방·집행유예는 실효²³⁾되고 가중료등은 취소²⁴⁾되나,

과실범으로 금고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는 가석방·가중료등·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되지 않으므로, 금고이상의 형이 가석방·가중료등·집행유예기간 보다 단기인 경우 금고이상의 형 종료 후에도 가석방·가중료등·집행유예 기간이 계속됨.

-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받게 된 때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하는 제13조6항제2호를 가석방·가중료등·집행유예로 인한 전자장치 부착에도 준용하는 규정을 두어, 가석방·가중료등·집행유예로 인한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과실범으로 금고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 집행을 받고 그 형

2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부착명령 집행의 종료) 제28조의 부착명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1. 부착명령기간이 경과한 때
2.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때
3. 집행유예된 형이 사면되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23)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제74조(가석방의 실효)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24)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가중료 취소와 치료감호의 재집행)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 심의위원회는 피보호관찰자(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치료감호기간 만료 후 피보호관찰자가 된 사람은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결정으로 가중료등을 취소하고 다시 치료감호를 집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때. 다만, 과실범은 제외한다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된 이후 남아있는 가석방·가종료등·집행유예 기간에도 전자장치 부착의 집행을 재개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 또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부과받는 가석방·가종료등·집행유예는 「형법」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게 되고²⁵⁾,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보호관찰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보호관찰이 종료되지 않고 해당 형의 집행기간 동안 보호관찰 기간이 계속되고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면제되는 등의 경우에도 보호관찰 기간이 남아있는 때에는 그 잔여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²⁶⁾하고 있으므로, 보호관찰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해서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정지 준용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현행법은 가석방·가종료등·집행유예로 인한 전자장치 부착

25)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감명령) 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감을 명할 수 있다.

제73조의2(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②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보호관찰) ① 피치료감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이하 “보호관찰”이라 한다)이 시작된다.

1.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었을 때
2. 피치료감호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받도록 법정대리인등에게 위탁되었을 때
3. 제1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이하 “치료감호기간”이라 한다)이 만료되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심사하여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치료감호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6)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보호관찰의 종료) ②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해당 형의 집행기간 동안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 기간은 계속 진행되고,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면제되거나 보호관찰 대상자가 가석방된 경우 보호관찰 기간이 남아있는 때에는 그 잔여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집행한다.

명령에서도 제13조제6항제1호²⁷⁾에 따른 부작명령의 집행 개시 후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때에는 부작명령 집행을 정지하는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피부착자들이 구금된 이후 무죄판결 확정 등으로 구금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구금기간 동안 부작명령이 집행된 것으로 보는 제13조제7항²⁸⁾을 준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부착자들의 불이익 보전 측면과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를 모두 본형에 산입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규정²⁹⁾에 비추어 개정안과 같이 가석방·가종료등·집행유예로 인한 전자장치 부작명령에서도 제13조제7항을 준용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27)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부작명령의 집행)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작명령의 집행을 정지된다.

1. 부작명령의 집행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때

28)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부작명령의 집행) ⑦ 제6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구금이 종료되는 경우 그 구금기간 동안에는 부작명령이 집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1.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경우

2. 검사가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또는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3.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29) 「형사소송법」 제482조(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 ①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판결선고 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한다)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범죄 추가에 따른 부칙명령 청구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조에 따른 부칙명령 청구는 이 법 시행 전에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죄 등 특정범죄(이하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등죄”라 한다)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등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등죄(성폭력범죄로 한정한다)로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은 제5조제1항제3호의 습벽이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

④ 제21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의 청구는 이 법 시행 전에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등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⑤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은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등죄를 저질러 이 법 시행 당시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⑥ 제28조에 따른 집행유예 선고 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등죄를 저질러 이 법 시행 당시 재판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칙명령을 선고하거나 준수사항 부과 등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칙명령의 집행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부칙명령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 면제 또는 가석방되었거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부칙명령의 집행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6항제1호·제2호 및 제8

항제2호(제21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와 제27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 개정안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부작명령 청구 등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고,

부칙 제4조제1항전단은 부작명령 원인이 된 특정범죄 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 사건으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되는 경우 그 구금이 종료되는 날을 부작명령 개시시점으로 하는 규정을 현재 부작명령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에게 소급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전자장치 부작명령을 소급적용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작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4.15., 법률 제10257호) 제2조제1항 위헌제청 사건³⁰⁾에서 보안처분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박탈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한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헌으로 결정³¹⁾한 바 있으나,

30) 2012. 12. 27. 2010헌가82, 2011헌바393(병합)

전자장치 부착은 신체의 자유라는 법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강한 ‘형벌적 성격’을 가진 형사상 제재이므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기 위해서는 그 범행 당시에 이미 전자장치 부착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어야 하므로 해당 부칙조항은 소급처벌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전부 위헌의견이 있었던 만큼 이를 감안하여 개정안이 소급적용 하고 있는 부분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075

- 31) 재판관 9인 중 4인은 ‘징역형 등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게까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제도를 처음 시행할 때 마련한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발생하자 제도가 시행된 지 약 1년7개월 만에 부칙조항을 마련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끔 한 것으로 법익균형성을 상실하였다는 일부위헌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재판관 1인은 해당 부칙조항이 헌법 제13조제1항 전단이 규정한 소급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전부위헌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